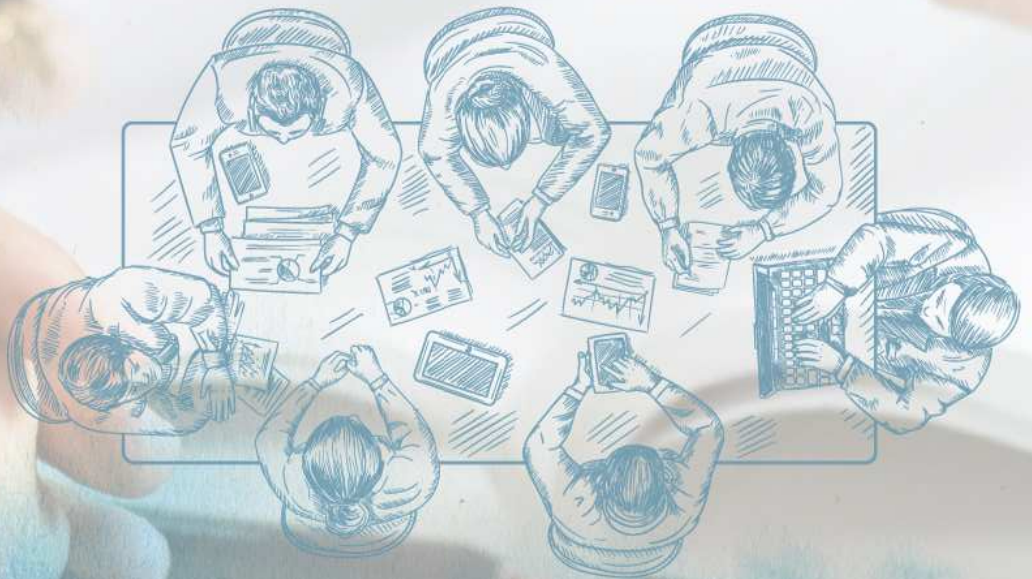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 제8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Yangpyeong county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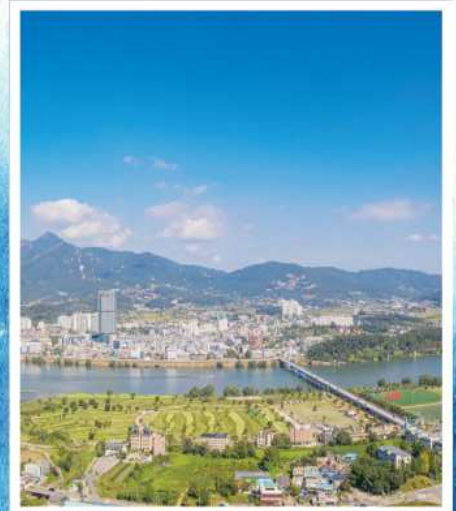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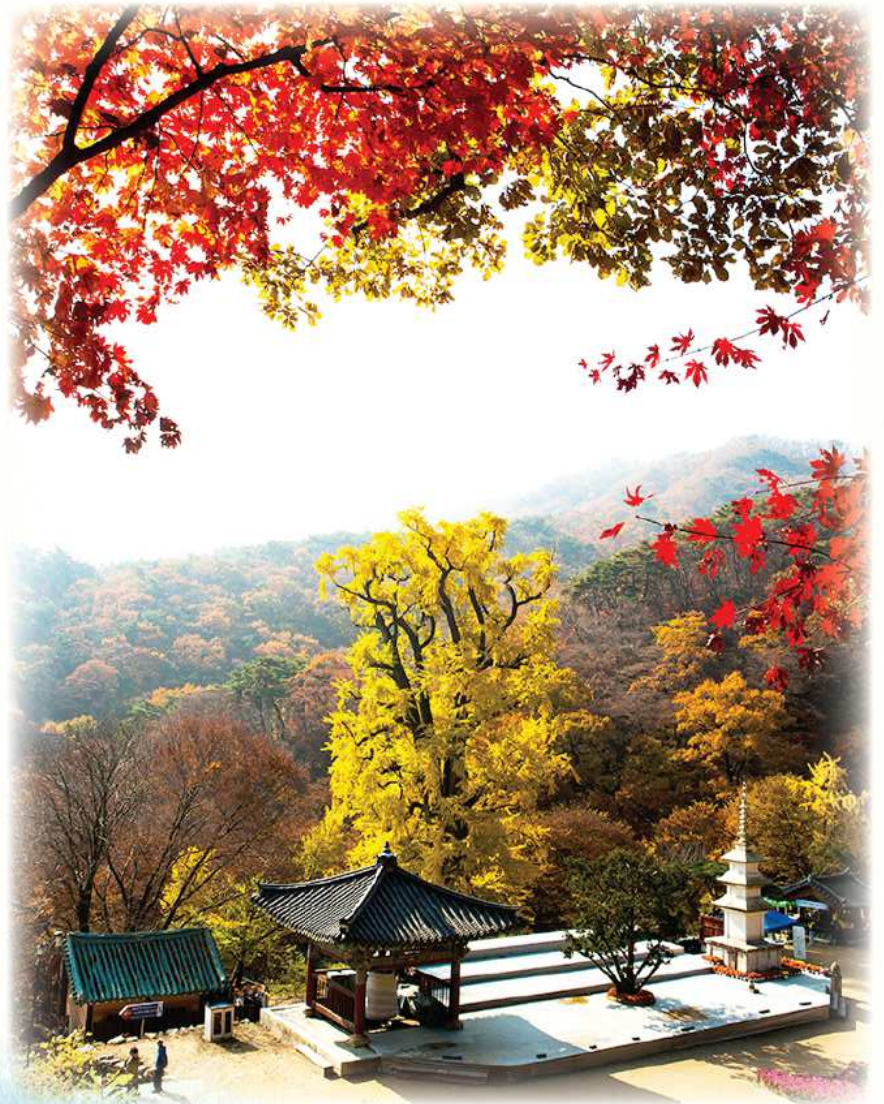
생각이 모여 마음이 하나되어  
희망찬 양평을 만듭니다



양평군의회  
YANGPYEONG COUNTY COUNCIL

## CONTENTS

- 03 | 목표와 비전
- 04 | 의회연혁
- 06 | 일반현황
- 07 | 의회 사무과 현황
- 08 | 의회구성
- 09 | 의회운영
- 10 | 의회역할
- 12 | 의회 기능과 권한
- 16 | 의안처리 절차
- 17 | 의회회의
- 18 | 방청·청원·진정
- 19 | 의회 안내





# 목표와 비전

##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의정	내실의정	현장의정	전문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민의 알권리 충족</li> <li>· 회의참관 유도</li> <li>· 투명한 의정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운영계획수립</li> <li>· 의정활동협회의의날 운영</li> <li>· 집행기관 업무보고 및 질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불편 해소</li> <li>· 현장위주 의정</li> <li>· 읍/면 담당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의 정밀 심사</li> <li>· 의정특강 실시</li> <li>· 선진지 연수</li> </ul>
소통을 통한 신뢰강화	균형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가속화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	차별화된 정책 제안

## 의회연혁

### 제1대 양평군의회

1991. 4. 15. ~  
1995. 6. 30.

1991. 4. 15.  
제1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조병훈 / 부의장 정인영

1993. 4. 9.  
제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이광남 / 부의장 정인영

1995. 3. 27  
제1대 후반기 의장단 보궐선거  
의장 이병영, 부의장 김영수

### 제2대 양평군의회

1995. 7. 1. ~  
1998. 6. 30.

1995. 7. 10.  
제2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장재찬 / 부의장 박용직

1997. 1. 8.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장재찬 / 부의장 황일성

### 제3대 양평군의회

1998. 7. 1. ~  
2002. 6. 30.

1998. 7. 7.  
제3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김영구 / 부의장 고기섭

2000. 6. 30.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정운상 / 부의장 박정철

### 제4대 양평군의회

2002. 7. 1. ~  
2006. 6. 30.

2002. 7. 5.  
제4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정운상 / 부의장 박장수

2004. 6. 30.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박정철 / 부의장 문필수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제8대 양평군의회(후반기)

### 제5대 양평군의회

2006. 7. 1. ~  
2010. 6. 30.

2006. 7. 10.  
제5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이인영 / 부의장 김덕수

2008. 7. 4.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권오균 / 부의장 윤철선

### 제6대 양평군의회

2010. 7. 2. ~  
2014. 6. 30.

2010. 7. 9.  
제6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김승남 / 부의장 박현일

2012. 6. 29.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김승남 / 부의장 이종식

2014. 4. 16.  
제6대 후반기 의장 사퇴  
의장 직무대리 / 부의장 이종식

### 제7대 양평군의회

2014. 7. 1. ~  
2018. 6. 30.

2014. 7. 1.  
제7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박명숙 / 부의장 박현일

2016. 6. 28.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이종식 / 부의장 이종화

### 제8대 양평군의회

2018. 7. 1. ~  
2022. 6. 30.

2018. 7. 3.  
제8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이정우 / 부의장 송요찬

2022. 6. 26.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전진선 / 부의장 송요찬

## 일반현황

### 의원현황



의장 전진선



부의장 송요찬



의원 박현일



의원 이정우



의원 황선호



의원 이해원



의원 윤순옥

### 담당분야 및 담당지역 현황

의원명	담당분야 [6개 분야, 32개 부서]	담당지역
전진선 의장	총괄	총괄
송요찬 부의장	문화·관광·교육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양동, 지평, 용문, 개군
박현일 의원	지역개발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공동체구축과, 지역개발과, 수도사업소)	옥천, 양평
이정우 의원	주민자치·행정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세무과, 회계과)	양서, 서종
황선호 의원	환경·도시 (환경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사업소)	양평, 옥천
이해원 의원	복지·보건·민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토지정보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강상, 강하, 단월, 청운
윤순옥 의원	일자리·산업·경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서종, 양서

※ 읍면, 양평공사 공통



## 의회 사무과 현황

### 직제



### 정·현원 현황

구분	계	행정 5급	행정 6급	행정 7급	운전 7급	행정 8급	속기 7급	속기 8급	운전 8급	운전 9급
정원	13	2	3	3	1	1	1	1	0	1
현원	13	2	3	2	1	2	1	1	1	0

※ 정원 외 : 3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1, 무기계약근로자 2]

### 청사현황

시 설 명	면 적(m <sup>2</sup> )	시 설 명	면 적(m <sup>2</sup> )
계	1,144.463		
의장실	86.12	사무실	92.40
부의장실	41.76	자료실	45.36
의원사무실 (별관 3층)	205.13	부속실	28.92
본회의장	173.19	열린의회실	69.49
위원회실	102.96	기 타 (화장실, 복도, 계단 등)	299.133

# 의회구성



**전진선 의장**  
선거구 : 나선거구  
전화 031-770-2500



**송요찬 부의장**  
선거구 : 나선거구  
전화 031-770-2501



**박현일 의원**  
선거구 : 가선거구  
전화 031-770-2534



**이정우 의원**  
선거구 : 가선거구  
전화 031-770-2532



**황선호 의원**  
선거구 : 가선거구  
전화 031-770-2531



**이혜원 의원**  
선거구 : 나선거구  
전화 031-770-2533



**윤순옥 의원**  
선거구 : 비례대표  
전화 031-770-2535





## 의회운영

- 주민의 대표기관·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구 분	집 회 일	주 요 안 건
1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 (단 지방선거실시 연도는 9~10월중)	결산 및 예비비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2차 정례회	매년 12월 1일	예산안 심의·의결 군정질문
임 시 회	- 군수 요구 시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시	예산(안)·조례(안) 일반안건

## 본회의 운영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결정 단계로써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결정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 특별위원회 운영

- 조례안 및 청원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필요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소관사항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결산안 심사, 예비비 지출 승인 등

###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회로, 징계 요구의 건 등이 발의된 경우 구성하며,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소관사항 :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 등

## 의회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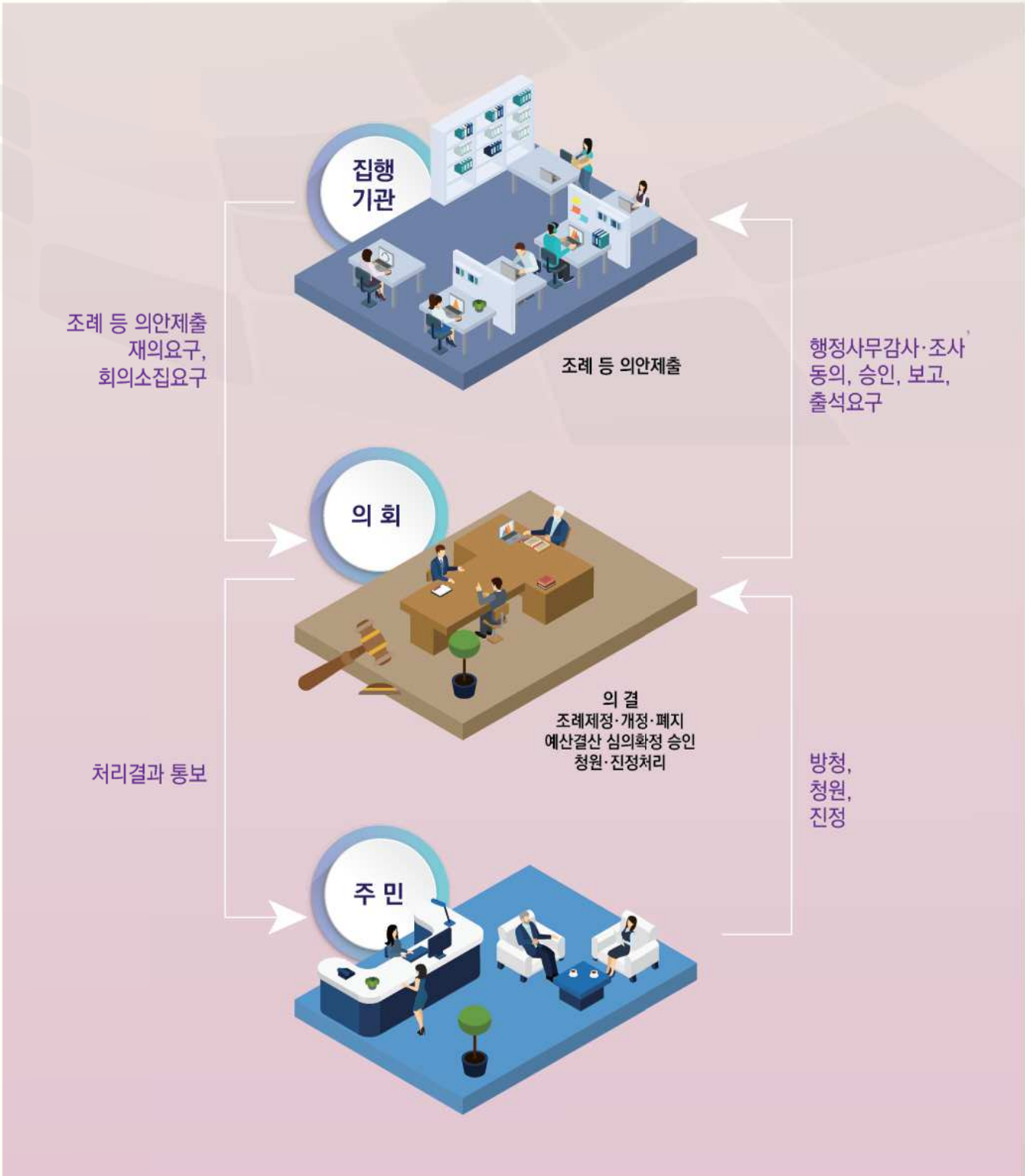


- 예산·결산안 승인, 청원·진정처리
-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 행정사무감사·조사, 동의, 승인, 보고
-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그 제도적 역할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 정책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 분쟁조정자와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 의회의 기능과 권한

### 의회의 기능

#### 주민의 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입법기관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한다.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의회의 권한

### 의결권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

#### ▶ 지방자치법상 필수적 의결사항

-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설(법 제6조)
-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법 제41조)
- 채무 지체행위(법 제124조 제4항)
- 채무면제 및 효력변경(법 제124조 제5항)
- 계속비(법 제128조)
- 행정협의회 설립 규약(법 제15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규약(법 제159조 제1항)

### 동의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업무에 대하여 의회가 사전에 의결로써 뒷받침 해줌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이며, 동의 받을 사항을 동의 없이 집행기관이 권한을 행사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무효임.

- 지방채 발행 :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채무부담 원인행위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법 제124조)

## 의회의 기능

### 승인권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이미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집행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한이며,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나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 책임문제와 향후 정책판단에 참고가 될 뿐 이미 집행된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음.

- 결산의 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134조)
- 예비비 지출승인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러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129조)



### 의견제시권

법적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구역변경·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법 제4조)  
 청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제시(법 제76조)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승인 신청 시 의견제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의회의 권한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의 제출과 군수 또는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의 중 9일 이내 군정 전반 감사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정 사안 조사

### 자율권

의회는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질서의 유지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선거권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 선거, 위원회 위원 선임, 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다.

### 청원처리권

군민으로부터 1인 이상의 의원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표명권

공공이익을 위해서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안처리 절차

조례안	예산안	청원
<b>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수</li> <li>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li> </ul>	<b>예산안 편성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수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li> </ul>	<b>청원서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자(군의원 1인 이상의 청원 소개 의견서 첨부)</li> </ul>
<b>심의·의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회의 상정</li> <li>제안 설명·검토보고, 질의토론</li> <li>재적의원 과반수 출석</li> <li>출석의원 과반수 찬성</li> </ul>	<b>심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상정</li> </ul>	<b>심사·의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10일 이내 심사 후 본회의에 회부</li> <li>본회의에서 청원 채택 여부심사·의결</li> </ul>
<b>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li> </ul>	<b>의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회의에서 회계 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li> </ul>	<b>이송·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수에게 송부</li> <li>군수는 의회에 처리 결과 보고</li> </ul>
<b>공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포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경과 후 발생)</li> </ul>	<b>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결된 예산안은 3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li> </ul>	<b>통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인에게 회의 단계마다 처리결과 통보</li> </ul>





## 의회 회의

### 의회회의

#### 개의 선포

-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 제안설명

#### 심사보고

- 심사보고 : 보고자-상정안건의 소속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소속위원
- 제안설명 : 보고자-제안자
- 대상안건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 보고

- 보고자 : 의사팀장  
회의록에 게재하는  
일반적인 사항

#### 질의·토론

-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 토론 신청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
- 토론시 반대자 먼저 발언,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 허가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 가능



#### 발언

- 신상발언 또는 의사진행 발언

#### 표결

- 의결종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표결방법 : 이익유무,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투표



#### 안건상정

- 상정안건 :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
- 상정방법 : 의사 일정순서에 따라 1개 안건씩 상정이 원칙. 필요시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가능

#### 표결결과 선포(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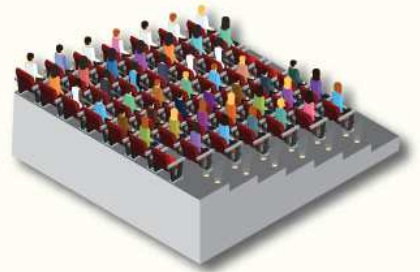


#### 산회 선포

## 방청 · 청원 · 진정

## 방청 및 청원, 진정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방청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성숙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가 더 없이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청을 바랍니다. 또한, 비회기중이라도 의회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의사팀 ☎ 770-2527)



- ▶▶▶ 청원 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양평군의회사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사팀 ☎ 770-2527)



- ▶▶▶ 진정 진정서는 군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정팀 ☎ 770-2523)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제8대 양평군의회(후반기)

## 의회 안내

### » 양평군의회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본관 3층

### »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http://www.ypcouncil.net>



### » 의원 전화번호

선거구	성명	전화번호
가 선거구	박 현 일 의원	031)770-2534
	이 정 우 의원	031)770-2532
	황 선 호 의원	031)770-2531
나 선거구	전 진 선 의장	031)770-2500
	송 요 찬 부의장	031)770-2501
	이 혜 원 의원	031)770-2533
비례대표	윤 순 옥 의원	031)770-2535

### » 양평군의회 대표전화

- |          |              |              |                |
|----------|--------------|--------------|----------------|
| ▪ 의회사무과장 | 031-770-2506 | ▪ 의사팀        | 031-770-2526   |
| ▪ 수석전문위원 | 031-770-2510 | » 회의운영       | 031-770-2527   |
| ▪ 전문위원   | 031-770-2511 | » 속기, 의안관리   | 031-770-2528~9 |
| ▪ 의정팀    | 031-770-2521 | ▪ 의장 비서실     | 031-770-2540   |
| » 의정홍보   | 031-770-2523 | ▪ 의원 비서실     | 031-770-2541   |
| » 서무, 회계 | 031-770-2522 | ▪ 의원 사무실 FAX | 031-770-2823   |
| » 의장수행   | 031-770-2524 | ▪ 의회 사무과 FAX | 031-770-2820   |



# 양평군의의회

YANGPYEONG COUNTY COUNCIL

